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!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김 창 원 의원 입니다.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 시행령에 따라
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
규정하여,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고 동물과
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은 「도시공원법」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인
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
명시하였습니다.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

상위법에서 규정한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,
동물놀이터 설치와 관련한 법 해석 상의 혼란을 막아,
천만도시 서울에서 시민 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과
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
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
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
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